

## 교원징계에 관한 규정

제정 2011. 09. 30    개정 2015. 07. 29  
개정 2017. 12. 26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경동대학교 정관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경동대학교 교원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과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9.)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이하 ‘본교’ 라고 한다.) 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7.12.26.)

② 교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법인 경동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 경동대학교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12.26.)

1. 본교의 교원 또는 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17.12.26.)

1.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제2조 및 제3조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을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본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위원회의 위원 중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4조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장 징계의 양정 및 감경기준

제5조 (징계양정의 기준) 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선의 정, 징계요구내용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규칙을 준용하여 [별표1], [별표1-2], [별표1-3]의 기준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7.29. 2017.12.26.)

제5조의2 (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하며,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교원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3분의 2를 감한다.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본조신설 2017.12.26.]

제6조 (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기관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4. 이사장, 경동대학교총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개정 2015.7.29., 2017.12.26)
5. 지역사회 및 봉사단체 장의 선행표창을 받은 공적
6. 장기간 근무하면서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공적

②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징계양정의 감경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별표3」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9.)

제7조 (징계감경의 제외)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비위
2.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개정 2015.7.29.)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성적과 관련한 비위

4. 다음 각 목의 범죄 또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개정 2015.7.29.)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4의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신설 2015.7.29.)

5.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로 인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6.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 제3장 징계절차

제8조 (징계의결의 기한) 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제척사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0조 (위원의 기피) ① 징계대상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정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징계의결요구 사유통지) 이사장이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9.)

제12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선) ①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를 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이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징계의결서 작성요령) ① 위원회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사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기재한다.

## 제4장 보 칙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는 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제5조 관련) (개정 2015.7.29., 2017.12.26)

**징계기준**(제5조 관련)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라.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	파면	해임	해임-정직	감봉-견책
마.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파면	해임	해임-정직	감봉-견책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파면	해임	해임-정직	감봉-견책
사. 연구부정행위	파면	해임	해임-정직	감봉-견책
아.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	정직-감봉
자. 성희롱 등 소속 기관 내의 성(性)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파면	해임	해임-정직	감봉-견책
차.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타. 부정청탁	파면	해임	정직-감봉	견책
파.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나.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 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그 밖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과면 과면 과면-해임	해임 해임 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과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 방치 다.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라.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과면 과면-해임 과면-해임 과면-해임 과면-해임	과면-해임 정직 해임 정직 정직	정직 정직-감봉 정직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비고 제6호에 따름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희롱 나. 성매매 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라. 성폭력 마.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바.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사. 음주운전 아.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과면 과면 과면 과면 과면 과면 과면-해임	과면-해임 해임 과면 과면 해임 정직	정직 정직 과면-해임 과면-해임 과면 해임-정직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해임 과면-해임 감봉-견책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과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9. 집단 행위 금지 위반	과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비고 1. 제1호사목에서 "연구부정행위"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자목 및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3. 제1호카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4. 제1호타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5. 비위행위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2를 준용한다. 6.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3을 준용한다.				

[별표 1-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별표1 비고 제5호 관련)

비위의 유형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감봉	해임-정직			파면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정직	파면			파면-해임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	파면-해임			파면
<p>※ 비고</p> <p>1.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p> <p>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p>					

[별표 1-3]

음주운전 징계기준(별표1 비고 제6호 관련)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퍼센트 미만인 경우	감봉 - 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정직 - 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 - 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정직 - 감봉	
	중상해의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 - 정직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 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	



[별표2] 징계의 감경기준(제6조 관련)

징계의 종류	감경된 징계
파면	해임
해임	강등
강등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견책	불문(경고)

[별지 제1호 서식]

## 교원징계의결요구서

인적 사항	성명	한글		소 속		직위(급)	
		한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주 소						
징계 사유							
징 계 의 결 요 구 자 의 의 견							
<p>정관 제 6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p> <p>첨부 1. 징계협의자의 징계에 관한 입증서류 1부. 2. 징계협의자의 이력서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학교법인 경동대학교 이사장</p> <p>경동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p>							

[별지 제2호 서식]

## 출석통지서

인적 사항	성 명	한글		소 속	
		한자		직위(급)	
	주 소				
⑤출석이유					
⑥출석일시		20    년    월    일    시			
⑦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의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함			
정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경동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			
귀하					

(절 취 선)

## 진술권포기서

인적 사항	성 명	한글		소 속	
		한자		직위(급)	
	주 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경동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징 계 의 결 서

징 계 협 의 자 인 적 사 항	소 속	직위(급)	성 명										
의 결 주 문													
사 유													
<p>20    년    월    일</p> <p>경동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p> <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tr> <td style="padding: 0 20px;">위 원 장</td> <td style="text-align: right;">(인)</td> </tr> <tr> <td style="padding: 0 20px;">위 원</td> <td style="text-align: right;">(인)</td> </tr> <tr> <td style="padding: 0 20px;">위 원</td> <td style="text-align: right;">(인)</td> </tr> <tr> <td style="padding: 0 20px;">위 원</td> <td style="text-align: right;">(인)</td> </tr> <tr> <td style="padding: 0 20px;">위 원</td> <td style="text-align: right;">(인)</td> </tr> </table>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